

외국인 유학생 졸업인증 운영 지침

제정 2025. 6. 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“한림대학교 학칙” 제43조 및 “학칙에 관한 시행세칙” 제37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교 입학전형에서 한국어 능력기준에 따라 입학한 정원의 외국인입학생으로 한다.

제3조(졸업인증기준) ①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인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(이하 “TOPIK”이라 한다) 4급 이상
2.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
3.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중급2 이상 이수

② 전항의 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 졸업인증 특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(서식1)를 글로벌교류센터에 제출하고 한국어 교육센터 졸업인증 특별 프로그램 90시간을 이수하여 졸업을 인증할 수 있다.

1. 졸업유보 상태가 아닌 졸업 예정 재학생으로 한국어 졸업인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공통 졸업기준 및 학과별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
2. 입학 이후 응시한 2회 이상의 TOPIK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

제4조(시행절차) ① 제3조에 따라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은 졸업 학기 최종 졸업사정 전까지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각 단과대학장은 졸업사정 시 졸업예정자의 인증 여부를 학과 및 단과대학 심의를 거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미 취득자의 처리) ① 한국어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취득 시까지 졸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단, 최초 졸업유보 학기로부터 6학기가 되는 학생이 한국어 졸업인증 미취득 사유를 소명하고 졸업 심사료를 납부한 때에 한하여 학과 및 단과대학의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인증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,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각 주관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제정 지침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기 졸업유보자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전 이미 졸업유보 상태인 학생의 한국어 졸업인증 특별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졸업인증은 첫 회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한다.

